

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1. 11. 22

문 교 사 회 위 원 회

1. 심사결과

1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1년 11월 13일

○ 회부일자 : 1991년 11월 13일

다. 상정일자 : 제73회 임시회

○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(1991. 11. 21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보사환경국장 김용덕)

가. 제안사유

의료보호법 (법률 제4353호, 91. 3. 8) 및 의료보호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3461, 91. 9. 6)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1) 위원회의 위원수를 “5인”에서 “7인”이내로 증원
- 2) 위원의 임기를 “2년”에서 “3년”으로 연장하고 연임이 가능토
록 함.
- 3) 위원장 이외에 부위원장직 신설
- 4) 시·군 심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도 심의위원회의 기능 조정
 - 가) 의료보호기금의 관리, 운영에 관한 사항
 - 나) 시·군의 의효보호 사업의 조정
 - ※ 시·군 심의위원회의 기능
 - 보호기간의 연장승인
 - 입원기간의 연장승인
 - 타 지구에서의 진료승인
 - 대불금의 결손처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김영만)

가. 지난 1991년 3월 8일 의료보호법과 1991년도 9월 6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,

나. 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기능 조정으로 시·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의료보호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진료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등 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 요지 및 성명

질의자	요 지	답 변 자	요 지
차주원	○ 심의위원회 위원의 중원되는 인원의 자 격은?	보사환경 국 장	○ 의사회와 협의하여 전 문 의사중 추천받아 신 중히 선출하겠음.

5. 토 론 요 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해당사항 없음.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심사보고 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 1부.